

## 티브이에스 교통FM 등 17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

- 공공성·공적 책무 강화 조건 부과...티브이에스(TBS) 상업광고 허용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에 대해서는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14개 라디오 방송국, (주)엠비씨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 등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이들 방송국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 650점 미만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추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 22일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으며, 청문위원들은 재허가 심사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방송사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라디오 제작 투자 개선, 방송의 공공성 확보 등 사업자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 방송국이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방송공사 광주제2표준FM 등 14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는 라디오 제작·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주)엠비씨경남 진주·창원 제2FM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이행, 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재원 다각화를 위한 상업광고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방송사업자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주요 내용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기훈 (02-2110-1420)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사공영은 (02-2110-1421)



**① 한국방송공사**

- 대상 방송국 : 광주2표준FM, 창원2표준FM, 춘천2표준FM, 대구제2AM, 대구제2표준FM, 제주2표준FM, 울릉1FM, 부산2표준FM, 충주FM, 강릉FM, 진주FM, 목포FM, 울산FM, 원주FM

**【 조건(안) 】**

- 지역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에 대한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4월말까지 그 이행 실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후 추가로 제출한 개선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계획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 개선계획이 우선함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항목 중 계획은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외 자료는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 및 이행실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계획·이행실적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수립 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
  -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추가 제출하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23년도 재허가 시 동 조건을 부과받아 동 세부 방안을 기 제출한 사업자는 추가 제출 불필요

- 라디오 방송 수신 환경 모니터링 및 수신 불량지역의 수신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AM 라디오 방송을 폐국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FM 수신 방법 안내 등 청취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 직전년도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비율 이상(지역국 3%, 지역민방 14%, 지역MBC 10%)으로 할 것
  -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다만, 매출액 급등 등으로 당해 연도 조건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무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AM 라디오와 관련한 정부의 매체 정책을 따를 것 (※ AM방송국 해당)
- '24년 7월 이후 방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6년~'29년 동안의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운용 방송국 전반의 콘텐츠 제작 및 시설 투자 계획을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법 및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보도책임자 임명현황 및 임명과정 등을 포함한 변경내역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취재·보도·제작·편성에 대한 대·내외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자율체계를 마련하고, 그 계획을 재허가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수신료 과오납 방지 및 수신료 민원 접수방법 정비 등 수신료 민원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협의된 세부 계획 일정에 따라 이행할 것

※ 음영표시 : 조건부 재허가 사항

## 【 권고(안) 】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를 준수할 것
  - 위원 구성 시 다양성·대표성을 위해 특정 직종 분야나 연령, 성별의 위원 비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할 것
-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 후 시행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을 각 방송사 자체 재난 방송 매뉴얼에 반영할 것
- 외부 인사가 포함된 관련 내부위원회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여 운영할 것

## ② (주)엠비씨경남

○ 대상 방송국 : 진주제2FM, 창원제2FM

### 【 조건(안) 】

-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 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년도 이행 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할 것
-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후 추가로 제출한 개선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계획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 개선계획이 우선함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항목 중 계획은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외 자료는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 및 이행실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계획·이행실적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수립 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
  -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추가 제출\*하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23년도 재허가 시 동 조건을 부과받아 동 세부 방안을 기 제출한 사업자는 추가 제출 불필요
- 라디오 방송 수신 환경 모니터링 및 수신 불량지역의 수신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AM 라디오 방송을 폐국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FM 수신 방법 안내 등 청취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 직전년도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비율 이상(지역국 3%, 지역민방 14%, 지역MBC 10%)으로 할 것

-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다만, 매출액 급등 등으로 당해 연도 조건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무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방송사(자회사·부설기관 포함)의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 운영 현황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금운영규칙에 따른 자금 운영내역(자금 대여, 회수 여부 등 포함)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연 1회 이상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한 후,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법 및 심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심의제도(사전심의준수, 심의일지 작성, 심의절차 전산화 등)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주주와 방송법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자체 감사제도 실시 등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취재·보도·제작·편성에 대한 대·내외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자율체계를 마련하고, 그 계획을 재허가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음영표시 : 조건부 재허가 사항

## 【 권고(안) 】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를 준수할 것
  - 위원 구성 시 다양성·대표성을 위해 특정 직종 분야나 연령, 성별의 위원 비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할 것
-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 후 시행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을 각 방송사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에 반영할 것
- 상호 협의를 통해 방송사업 및 중앙·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과도한 배당을 지양할 것

### ③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 대상 방송국 : 교통FM

#### 【 조건(안) 】

- 방송법 및 심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26년 8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서울특별시 출연금 삭감 등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문 당시 제출한 경영 개선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정관 변경 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부금 모집 현황(기부자, 기부금액 등), 기부금 사용내역 등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허가 이후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후 추가로 제출한 개선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계획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 개선계획이 우선함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재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항목 중 계획은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외 자료는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 및 이행실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계획·이행실적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수립 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
  -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추가 제출\*하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23년도 재허가 시 동 조건을 부과받아 동 세부 방안을 기 제출한 사업자는 추가 제출 불필요
- 연 1회 이상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한 후,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취재·보도·제작·편성에 대한 대·내외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자율체계를 마련하고, 그 계획을 재허가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음영표시 : 조건부 재허가 사항

## 【 권고(안) 】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를 준수할 것
  - 위원 구성 시 다양성·대표성을 위해 특정 직종 분야나 연령, 성별의 위원 비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할 것
-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 후 시행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을 각 방송사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에 반영할 것